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 11. 11 선고 2020가합3496 판결 [주식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22. 12. 14 선고 2021나27332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 11. 11 선고 2020가합3496 판결

전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기준

피고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은

변론 종결 2021. 10. 14.

판결 선고 2021. 11. 11.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4.부터 2021. 1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소장부분 송달일은 최종송달일로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광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13. 1. 24. 설립된 주식회사로, 총 15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였는데, 2019. 3. 31. 기준으로 E의 주식 중 원고가 95,000주를, F이 10,000주를, G이 15,000주를, H이 30,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4. 24. E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4. 10. 10. 사임하였고, 2016. 1. 24.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4. 24. 퇴임하였으며, 2017. 5. 25. 다시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8. 피고 B, C, D과 사이에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양도목적물】

"갑(원고)"이 "을(피고 B, C, D)"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100% 및 법인체
2. "갑"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 부채일체
3.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장비일체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 (허가사항) 일체

제2조 [양도 양수 대금]

양도 양수 매매대금은 4,300,000,000원으로 한다.

제3조 【대금지불방법】

을이 승계처리	I님 주식10%("을"이 책임지고 정리)	150,000,000
을이 승계처리	J단체 차입금("을"이 책임지고 정리)	380,000,000
을이 승계처리	(주)E 부채현황("을"이 책임지고 정리)	3,000,000,000
소계	3,530,000,000	
계약금	2019. 8. 8.	300,000,000
1차 중도금	2019. 11. 30.	100,000,000
2차 중도금	2020. 1. 11.	100,000,000
3차 중도금	2020. 4. 11.	100,000,000
4차 잔금	2020. 8. 11.	170,000,000
소계	770,000,000	
합계	4,300,000,000	
차입금 2020.11.11. 계약금으로 K조합 "갑"이 상환금액	제12조 12항 참고	

제12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갑"은 계약서 도장날인 후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K조합 경매가 안되도록 원금 및 이자를 먼저상환하고 "을"에게 2020. 11. 11. 받는 것으로 한다.
3. 원고 관련주식 먼저 63.5%를 계약금 입금 후에 "을"에게 경영권과 주식을 즉시 넘겨준다.
4. "을"은 부채목록에 명시되어 있는 K조합에 "갑"이 담보로 차입한 245,000,000원을 2021. 3. 30.까지 상환하여 담보를 해지하여 준다.
12. "을"은 "갑"에게 계약금 3억 원 지급한 것에서 "을"이 2억 원을 차입하여 K조합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을"은 "갑"에게 2020. 11. 11. 지급한다.
13. 본 계약과 동시 "갑"이 "을"에게 양도한 법인주식 및 E 관련된 것에 대해 "갑"에게 잔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 제3자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다(단, 상호 합의 하에 승낙하면 변경될 수 있다).

라. 피고 B은 2019. 8. 8. 원고에게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B을 'E의 주식을 양도받더라도 E의 부채 35억 3,000만 원을 승계받고 그 대금 7억 7,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E의 주식을 양도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으나, 2020. 5.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소속 검사는 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 소유의 부동산 및 공장설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금지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0. 22.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 소유의 안동시 L 임야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55,56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원고는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20. 8. 25. 청구채권 1,055,560,000원으로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한 사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M), 위 법원은 2020. 8. 26. 경매개시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임의경매신청이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배당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4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가) 원고가 이 사건 계약 해지 통보를 하여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다.

나) 피고 B는 2019. 12. 30.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20. 5. 13. 1억 원을 변제공탁 하였으므로 남은 매매대금은 2억 7,000만 원에 불과하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E 주식을 피고 B에게 45,000주, 피고 C에게 35,000주, 피고 D에게 15,000주로 각 분할하여 매도하는 후속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남은 잔금 2억 7,000만 원을 위 주식 수대로 분할하면 피고 B는 $127,894,736\text{원} [= 2\text{억 } 7,000\text{만 원} \times (45,000\text{주}/95,000\text{주})]$, 피고 C는 $99,473,684\text{원} [= 2\text{억 } 7,000\text{만 원} \times (35,000\text{주}/95,000\text{주})]$, 피고 D는 $42,631,578\text{원} [= 2\text{억 } 7,000\text{만 원} \times (15,000\text{주}/95,000\text{주})]$ 을 각 부담한다.

2) 이 사건 계약이 해지(또는 해제)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8. 27.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원고는 2020. 6. 26.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또는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2019. 8. 27.자 계약해지 통보는 그 해지 사유가 '2019. 8. 22. E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 등 서류 정리를 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들이 불참하였다는 것과 부채정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 등으로서 그에 관한 이행의 최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당시 1차 중도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지도 않았다).

② 원고의 2020. 6. 26.자 계약해지 통보는 그 해지 사유가 '피고들이 중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K조합 채무를 피고들이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연체하였다는 것' 등으로서 그에 관한 이행의 최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③ 또한 피고 B은 원고의 2020. 6. 26.자 계약해지 통보에 대하여 2020. 9. 14. '원고가 E 소유의 토지 등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원고의 남편 N이 E의 거래처에 협박을 하여 E의 납품이 끊기는 등 원고가 계약위반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20. 3. 30. '원고가 먼저 E과 관련한 창립총회 의사록 등의 문서를 인도하여야 하고, O의 채권가압류로 인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발송하는 등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위반에 대한 귀책 여부에 다툼이 있었다.

④ 원고는 위 계약해지 통보 이후 이 사건 계약이 해지(또는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주식매매대금 잔금에 대한 이행청구를 하고 있고, 피고들 또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를 인정하며 원상회복으로써 E의 주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사는 보이지 않고 있다.

3)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가) 2019. 12. 30.자 1억 원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 명의 계좌(P조합(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19. 12. 30. 원고 명의 계좌로 1억 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19. 8. 8.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1억 원이 이체되었고 당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② E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대체전표에 위 1억 원은 피고 B의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원고에 대한 주식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었던 점, ③ 피고 B은 2019. 12. 30. E 명의 계좌에 1억 1,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중 1억 원이 같은 날 원고에게 입금되었던 점, ④ 위 1억 원이 이 사건 계약의 중도금 이외의 성격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2019. 12. 30.자 1억 원은 이 사건 계약의 중도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20120. 5. 13.자 공탁금 1억 원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2020. 5.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년 금 제557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사실, 위 공탁의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이 기재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2020. 5. 13.자 공탁금 1억 원은 이

사건 계약의 중도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채무가 분할채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식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 진정성립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체결 이후 E의 주식을 1주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45,000주를 피고 B에게 4억 5,000만 원에, 35,000주를 피고 C에게 3억 5,000만 원에, 15,000주를 피고 D에게 1억 5,000만 원에 각 매도하는 내용의 후속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의 도장에 의한 것이 맞지만, 그 도장은 대표이사 변경 업무를 위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두었던 것인데 피고들이 위 도장을 이용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31943, 31950 판결 참조),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조된 점이 입증되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4786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주식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식매매계약서는

원고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추정은 반복된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들 스스로도 위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주식변동사항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주주명부 변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들 개별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세무서 신고 및 주주명부 정리 등의 업무를 위하여 실제 계약과는 내용의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을 여지가 있다.

② 위 주식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은 '2019년'이라고만 기재되어 그 작성일이 명확히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에 첨부된 원고의 인감증명서도 원본이 아니라 2019. 8. 8.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복사하여 첨부한 것이다.

③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최초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은 7억 7,000만 원인데 반하여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은 9억 5,000만 원이고 그 분담방식도 분할채무가 되는 등 이 사건 계약과 위 주식매매계약서는 계약의 내용이 달라 당사자들이 이를 변경하고자 하였다면 그에 따른 별도의 협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④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매매대금 채무가 분할채무라면, 피고들은 계약금 3억 원 및 중도금 2억 원 변제 당시 피고들 중 누구의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를 합의 또는 지정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⑤ 피고들이 위 5억 원 변제 당시 누구의 채무에 대한 변제임을 특정하지 않아 피고들의 주식 비율대로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은 9억 5,000만 원이고 피고들의 변제액 5억 원을 제하면 매매대금 잔액은 4억 5,000만 원에 이르게 되므로, 이를 피고들의 주식 비율대로 나누더라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된다.

나) 이 사건 매매대금 채무의 성격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매매계약서(을 제1호증)는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들은 매도한 주식 등과 지급할 주식대금을 전체로 정하였을 뿐이고, 또한 이 사건 계약은 피고 B이 주도하여 원고로부터 E의 경영권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소유한 주식 전부를 피고들이 양수하기로 한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들도 원고는 피고들에게 소유 주식 등을 전체로 매도하고, 피고들도 그 주식 등에 대한 매매대금을 공동으로

지급할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대상 및 반대급부·당사자들의 의사·당사자들의 관계·거래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대금 채무는 피고들의 연대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1. 2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주경태

판사이승엽

판사김준영